

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4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철규

변론 종결 2021. 1. 21

판결 선고 2021.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C 전 1,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4. 9. D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2. 9. 5. 원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 기소 접수 제36028호로 2012. 8. 2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 졌다.

나. 원고는 2015.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접수 제10326호로 2015.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등기 부상 위 토지의 거래가액은 50,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16.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 수 제9229호로 2018.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등 기부상위 토지의 거래가액은 7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주고 그 대가를 원 고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18.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피고는 위 토지를 E에게 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위 대가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나,계약상 의무를 부담하 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계약상대방의 손실에 의하여

이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 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선해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및 매매대금 지급 내지 반환 약정이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5,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비추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1)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매매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대리권 부여, 위임장 작성, 인감증명서의 교부 등으로 가능한데,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접 대화를 할 때에도(갑 제9호증), 원고는 피고에게 여주 땅을 원고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을 할 뿐이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만을 중점적으로 다투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약정의 일시, 약정이 체결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

4)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46886(본소), 2019가단246893(반소)]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사실관계가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이 명의신탁이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10.까지 송금한 69,1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고소한

형사사건(인천지방법검찰청 2019형제67741호)에서 '토지처분대금에 대한 반환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 사건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이 있었다.

다. 소결론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태환